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90
----------	-----

제출연월일 : 2007. 8. 24.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리정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와 정보화 사업의 표준 추진 절차를 규정한 「대전광역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 제정·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리정보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 나. 정보화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
- 다.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내용을 삭제함(안 제9장).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보화촉진 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7. 7. 13. ~ 8. 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기술 조직을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전자계산조직, 주변기기, 정보화전문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업무의 정보화 및 기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 모두를 말한다.
3. “주관부서의 장”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고, 성과품을 활용 또는 보급하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과장·팀장·단장·실장, 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의장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중 “구”를 각각 “자치구”로 한다.

제6조, 제22조제5항, 제29조 및 제9장(제33조 내지 제36조)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주 1) 및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월평균CPU사용시간 = 전산기기 보유 시도의 전년도 월평균CPU시간의 평균
※ CPU시간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가 해당업무를 처리한 시간임.
- 2) 월평균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월평균보수

제명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를 “대전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로 한다.

제7조제4항중 “대전광역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지방 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8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24조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한다.

제27조중 “사무관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중 “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한다.

제40조중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기술 조직을 말한다. 	<p>제1조(목적) -----</p> <p>----- 「정보화촉진 기본법」 -----</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기술 조직을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전자 계산조직, 주변기기, 정보화전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업무의 정보화 및 기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 모두를 말한다. 3. “주관부서의 장”라 함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품을 활용 또는 보급하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과장·팀장·단장·실장, 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의장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p>4.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전자 계산조직, 주변기기, 정보화전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업무의 정보화 및 기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 모두를 말한다.</p> <p>5.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대전 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 국, 원, 본부장, 의회사무처장, 사업소 장과 구청장을 말한다.</p> <p>6. “도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및 지하철 등 지상·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p> <p>7.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리정보 또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p> <p>8.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구 이외의 관내에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및 지역난방 등 통합관리체계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p> <p>②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 활용 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본계획) ①시장은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기본 계획의 수립시에는 국가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구의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기본계획) ① ----- ----- ----- ----- ----- <u>자치구</u> ----- ----- 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 ② (생략) ③시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구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할 수 있다.</p>	<p>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자치구</u> ----- -----</p>
<p>제6조(정보화 사업추진 준수사항)</p> <p>①부서별 정보화 사업추진시 주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주관부서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기획관리 실장과 사전 협의 할 것</p> <p>2. 기획관리실장은 제1호에 의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 합리성, 경제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것</p> <p>3. 주관부서의 장은 제2호의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정보화 사업계획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p> <p>②시장은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의 정보화추진 관련 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업무의 정보화·표준화)</p> <p>① ~ ④ (생략)</p> <p>⑤ 구청장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장은 행정·재정·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2조(업무의 정보화·표준화)</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29조(전자계산조직 도입설치) 전자 계산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관 부서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9장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p>	<p><삭제></p>
<p>제33조(지리정보체계의 도입) ① 시장은 토지 및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 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리정보 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도입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삭제></p>
<p>제34조(지리정보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효과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교통, 지하시설물, 지적 등 주요 지리정보를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②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유관기관의 장은 자료의 최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④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기반시설물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5조(도시기반시설물 자료의 통합 관리) ① 도시기반시설물 자료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도시기반시설물 자료의 통합관리 체계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의 장은 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자체 구축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시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p>	<p><삭제></p>
<p>제36조(지리정보 전산시스템 운영)</p> <p>① 시장은 지리정보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정의, 자료의 관리 및 제공 등 구체적인 제반 사항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지리정보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멸실·훼손에 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지리정보 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침해·훼손하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기준(제28 조제3항 관련)</p> <p>(생략)</p> <p>주 : 1) 월평균CPU시간 = 전산기기 보유 시도의 전년도 월평균 CPU시간의 평균(평균시간은 행정자치부에서 책정시달) ※ CPU시간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장치가 해당업무를 처리한 시간임.</p> <p>2) 월평균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월평균 보수(봉급, 전산수당, 기말 수당월평균액, 정근수당 월평균액 등을 합한 금액)</p> <p>3) ~ 4) (생략)</p>	<p>[별표]</p> <p>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기준(제28 조제3항 관련)</p> <p>(현행과 같음)</p> <p>주 : 1) 월평균CPU시간 = 전산기기 보유 시도의 전년도 월평균 CPU시간의 평균 ※ CPU시간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장치가 해당업무를 처리한 시간임.</p> <p>2) 월평균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월평균보수</p> <p>3) ~ 4)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의2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촉진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제4항

제5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촉진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3. 산업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4. 재정·금융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5. 교육·연구·과학기술·환경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생활 기타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7.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정보통신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촉진등을 위한 법령·제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기타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9조의2

제9조의2 (정보화책임관의 임명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은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4.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

□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등) ①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4. 여성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③ 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7년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2007년 8월 27일
3. 상정일자 :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9. 11)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송석두)

1. 제안이유

지리정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와 정보화 사업의 표준 추진 절차를 규정한 「대전광역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 제정·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리정보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 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
- 다.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내용을 삭제함(안 제9장).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희배)

○ 본 개정조례 안은

「대전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인용된 관계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IV. 토론 요지 : 생략

V. 질의답변요지 : 생략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